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69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0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10. 18.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
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단의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팀2023-1395호 ‘ 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고성군)’

3. 출연의 법적 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출연금, 도·시군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보증료 등

4.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 및 서민 복리 증진

5. 신용보증지원 방법

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융자규모: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용)

6. 2024년 고성군 출연 요청액 산정기준

(기준일자 : '23.6.30. 단위 : 억원, %, 개소, 사업체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0))

구분	총보증공급 (25%)		보증잔액 (25%)		대위변제 (25%)		재정자립 (10%)		GRDP (10%)		사업체수 (5%)		비율 합계	'24출연배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립도	비율	금액	비율	업체수	비율		1차	최종
합계 (경남)	141,218	25.0	26,320	25.0	3,691	25.0	261.06	10.0	1,108,461	10.0	444,636	5.0	100.0	200	205
고성군	1,176	0.2	314	0.3	47	0.3	9.36	0.50	22,929	0.2	7,579	0.1	1.62	3.25	3

* 24년 출연 배분액은 **최소금액임**. 출연액에 비례(10~12배)하여 시·군 정책자금 지원이므로 자금확대 필요시
출연배분액 이상 출연 가능. 출연배분액 초과분 15배수 적용

7. 고성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규모

구분	'24년 배분액	100% 출연시		70%이상 출연시		70%미만 출연시	
		출연액 (100%기준)	12배	출연액 (70%기준)	11배	출연액 (50%기준)	10배
고성군	3	3	36	2.1	23.1	1.5	15

* 출연 배분액 초과 출연분에 한해 운용배수 15배수 적용

8. 2024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금300,000천원

※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1년-300,000천원 / 2022년-300,000천원 / 2023년-300,000천원

9. 시·군별 출연금 현황 및 관련 현황·법규 : 붙임 참조

10.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출 사유

-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을 군비로 출연하기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주요 내용

- (출연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고성군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 (출연근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이 가능함.
- (출연금규모) 경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 지원요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보증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근 3년(2021 ~ 2023년)과 동일한 3억원을 출연금 규모로 결정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출연 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출연 필요성 및 규모 등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및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 홍보는 물론,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적극적인 관련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1.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12. 토 론 : 없음.

13. 심사결과 : 2023. 10. 18. 원안가결 함.